



보도자료

2015년 3월 2일(월) 배포 시점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문의 :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 (☎2110-1520)
개인정보보호윤리과 황지은 사무관 (☎2110-1523) jieunhwang@kcc.go.kr

방통위, 2015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

-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 19일까지 -

3월 2일,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「2015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」을 발표하였다.

※ 위치정보사업자 :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써 현재 이동통신사,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32개

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, 6월,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,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.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, 합병·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.

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(<http://www.ekcc.go.kr>)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,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(02-2110-1524)로 제출하면 된다.

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,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.

붙임 1. 2015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

2. 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. 끝

2015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

방송통신위원회는 『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, 2015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2015년도 허가 계획

- 허가 신청서 접수 : 3월, 6월, 10월(총 3회)
- 심사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임원결격 여부 심사 → 심사위원회 구성 → 허가 심사 →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→ 허가서 교부
- 심사항목 :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,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

□ 2015년 제1차 허가 접수

- 접수기간 : 2015. 3. 3(화) 09:00 ~ 2015. 3. 19(목) 18:00
 - ※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,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·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
- 접수방법 : 전자민원센터(<http://ekcc.g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
- 구비서류 : (온라인 접수) 허가 신청서, (방문제출) 사업계획서
 - ※ 사업계획서의 경우,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, 사본 15권, CD 1벌 방문 제출

□ 방문 접수처 및 문의

- 접수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
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(427-700)
- 문의 전화번호 : 02-2110-1524

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

1. 「위치정보사업자 허가」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

-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(25쪽 이내)과 기본사항, 영업계획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(표지 포함 전체 150쪽 이내)
 - (기본사항) 법인의 명세 및 조직,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
 - (영업계획)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,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등
 - (기술계획)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,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

2. 「위치정보사업자 허가」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

-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실시

<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>

심사항목	사업계획서 기재사항	점수
기본부문	· 재무구조의 건전성	8
영업부문	·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	8
	·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	4
	·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4
	·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	4
	·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	2
	·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	6
	· 인적보안	6
기술부문	·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·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	25
	·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	5
	·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	8
	·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	6
	· 시스템·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	14
총 점		100

※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(고시 2014-20호) 참조